

#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병주의원 대표발의)

## 검 토 보 고

### I. 주요내용

-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질병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의2 신설).

### 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·자구를 검토한 결과, 조사를 삭제하는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김 성 완)